

의안번호	제 300 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발의자	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김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의자 : 김정일, 이상정, 박봉순,  
안치영, 안지윤, 조성태,  
이윅희

## 1. 제안이유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 사회복지 관련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청소년지도자 적정 보수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규정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
- 다. 협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협의 완료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수 체계 마련)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적정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  
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20. 5. 19.>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  
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  
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  
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타 사회복지 관련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지도자 처우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도내 청소년지도자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 3. 관련조문

- 안 제6조(실태조사)
- 안 제7조(보수 체계 마련)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2027년 (5년간)
-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급
  - 2017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중이며, 현재 지급액 기준으로 비용 추계

### 나. 추계 결과 : 1,492,000천원

-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실시
  - 20,000천원 × 1식 × 2회 = 40,000천원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급

- 100천원 × 242명 × 12월 × 5년 = 1,452,000천원 \* 2023년 예산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실시 : 도비 100%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급 : 도비 40%, 시군비 60%(청주시 7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10,400	290,400	290,400	310,400	290,400	1,492,000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20,000			20,000		40,000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290,400	290,400	290,400	290,400	290,400	1,452,000
재원 조달		290,400	310,400	290,400	290,400	310,400	1,49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9,800	129,800	109,800	109,800	129,800	589,000
	지방세	109,800	129,800	109,800	109,800	129,800	589,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180,600	180,600	180,600	180,600	180,600	903,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